

■ 2018년 전문자료집 ■

부 모 교 육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2018년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 목 차 ☐

1. 기능향상지원1팀

- 18-01 수 개념 학습(수세기) 6
- 18-02 가족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10
- 18-03 애착형성 16
- 18-04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22

2. 기능향상지원2팀

- 18-05 뇌성마비에서의 보툴리눔 독소 치료방법 28

3. 가족문화팀

- 18-06 건강한 대화가 따뜻한 관계를 만든다 36
- 18-07 행복소통, 학생진로설계 42

4. 직업지원팀

- 18-08 자녀의 자립생활을 위한 부모의 역할 48
- 18-09 그룹미술심리지원을 통한 행복한‘나’ 찾기 52

5.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18-10 2018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56
- 18-11 한국의 발달장애인 신탁제도의 운영 현황과 과제 62

5. 보호작업장 열린일터

- 18-12 2018년 열린일터 연간 사업 일정 80
- 18-13 장애등급제 폐지, 어떻게 달라지나 94

수 개념 학습(수세기)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8년 8월 16일 ~ 2018년 8월 28일
장 소	서면교육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수 개념 학습(수세기)

수 개념이란 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일상생활에서 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수세기는 수학의 기본 원리를 터득하고 개수, 순서, 크기, 비교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수의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1. 수 개념 하위요소

일대일 대응 - 물체 하나에 다른 물체 하나를 짝짓는 활동 → 수세기의 준비과정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적하기, 사람 수대로 물건 가져오기, 바구니 하나에 물건하나씩 넣기 등의 활동이 있다.000

숫자인식 - 시각적으로 숫자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숫자의 특징적인 생김새를 말로 표현해보기, 숫자노래를 부르면서 숫자의 모양을 탐색하기, 물체의 수량을 세어보고 숫자카드와 짝짓기 등의 활동이 있다.

수의 부분과 전체 - 전체는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부분들이 합쳐져서 다시 전체를 이룰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등의 수리적 학습의 의미를 가짐

더하기와 빼기 - 숫자와 기호를 사용한 덧셈과 뺄셈, 사물의 수량을 더해보고 빼보는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

수세기 - 수 이름을 기억하여 어떤 사물을 세는 수세기 활동

2. 수 세기의 종류

1) 기계적 수세기

- * 기억에 의해 숫자의 이름을 순서대로 암송하는 것, 즉 물체를 세는 행동 없이 수의 이름을 순서대로 세는 것.
- * 모든 물체를 반드시 한 번씩 세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을 두 번 세거나 건너뛰고 세는 실수를 한다.

2) 합리적 수세기

- * 각 숫자의 이름을 물체와 순서대로 짝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기계적 수세기+일대일 대응 = 합리적 수세기
- * 기계적 수세기 다음에 오는 단계로 합리적 수세기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수세기로 본다. 대상 물체를 손으로 가리키며 세는 경우가 많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리키는 행위가 내면화된다.

3. 수세기 전략

수세기 전략은 조작 가능한 물체가 있는지의 여부, 다루는 수의 크기, 문제의 난이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덧셈상황의 수 세기 전략>

단계	방법	내용
구체적 물체로 세기	모두 세기	두 집합의 물체를 전부 세기
과도기	손가락으로 세기	구체적 물체가 없을 경우 손가락으로 대신 세기
정신적 수 세기	이어세기	첫 번째 수 다음부터 계속 세기
	큰 수부터 세기	두 수 중 큰 수 다음부터 계속 세기

<뺄셈상황의 수 세기 전략>

단계	방법	내용
구체적 물체로 세기	덜어내고 세기	구체적 물체를 사용하여 감수를 덜어내고 나머지 세기
	감수에서 피감수까지 더해가기	감수로부터 구체적 물체를 피감수까지 더하기
정신적 세기	세어 올리기	감수에서 피감수까지 세어올라가기 예:6-4의 경우 - 4, 5(하나), 6(둘)
	거꾸로 세기	피감수부터 감수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가기 예:6-2의 경우 - 6,5(하나),4(둘),3(셋),2(넷)

4. 수세기 지도

1) 수 단어 획득 - 각각의 수 단어가 분리된 수 단어로 인식하지 못하여 ‘하나둘셋’이 한 단어로 인식하다가 점차 각기 ‘하나’ ‘둘’ ‘셋’의 분리된 수 단어로 이해. 말로 세기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즐겨 세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수 단어를 세는 기회를 주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물체세기 - 말로 세기가 가능하게 되면 물체를 수량화하는데 수 단어를 적용하여 물체를 셀 수 있게 되며, 이를 물체세기라 한다. 일반적으로 말로 세기와 물체세기는 병행하여 발달되어 가지만 말로 셀 경우 물체세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셀 수 있다. 아이들이 정확한 물체의 수를 세기 위해서는 수세기 원리를 알 필요가 있다.

(1) 1:1 원리

배열된 각 물체에 대해 한 개의 수단어(수이름)을 부여하여야 한다. 물체에 두 개의 수단어를 부여하거나 수단어를 부여하지 않은 물체가 있는 경우 수세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안정된 순서의 원리

배열된 물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어들은 반복 가능하고 안정된 순서로 사용되어야 한다. 수단어를 획득했다면 하나, 둘, 다섯, 넷이 아닌 하나, 둘, 셋, 넷 등의 정확한 순서로 나열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수의 원리

물체의 집합을 세는 마지막 항목에 적용된 수단어가 그 집합의 물체수량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마지막 수단어는 그 항목에 대응된 수단어일 뿐 아니라 그 배열이 전체 수량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수단어는 그 항목에 대응된 수단어 일뿐 아니라 그 배열의 전체 수량을 표상하는 특정 수 이름의 의미도 함께 가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4) 순서 무관의 원리

배열된 항목을 세는 순서는 수량과는 무관하다는 것. 수량을 세는데 있어 어떤 항목에 어느 수단어를 대응시켜야 한다든지, 어디서부터 수 세기를 시작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순서와는 상관이 없다.

(5) 추상화의 원리

이 원리는 구체적 물체의 배열이나 집합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각 가능한 물건 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사건 등 정신적 실체도 수세기가 가능함을 이해해야 한다.

수세기는 우리가 획득하는 최초의 형식적인 계산 체계로서 물체의 양을 측정할 때 지각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양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수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된다. 아이가 실수를 고치고 수세기나 수에 대해 학습해 나갈 때 우리가 아이의 옆에서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에게 시범을 보이며 아이가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유아수학교육」 정연희, 창지사

「유아수학능력 발달과 교육」 홍혜경, 양서원

「유아의 수개념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이지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족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8.08.16. - 2018.08.24.
장 소	미술심리지원실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1. 가족 관계 및 갈등

가족은 '훈련의 장'이며 특히 관계를 맺는 면에서 더욱 그렇다. 자신의 가족들과 잘 지내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형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관계패턴이 형성되면 변화되기 어렵고 계속 반복된다.

부모들은 때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 한다. 아이들은 프로이트가 쾌락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동기화되는데, 이 쾌락의 원리는 아이들의 감각이 자극을 받거나 욕구들이 충족될 때 얻어지는 즉각적인 욕구 충족이다. 쾌락이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 있는 강화자이다. 부모들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은 대개 아이들에게 있어서 만족을 가져다준다. 이를 '즐거움'이라고 부른다. 아이들은 대개 의도적으로 나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는 성향이 있을 뿐이다.

효율적 부모훈련의 창시자인 토마스 고든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용어를 부모들의 어휘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잘못된 행동은 대개 유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일컫는다.

소리치고, 방해하고 그리고 추적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어른들을 화나게 하여 그들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불순종이 어른들을 화나게 하려는 아이들의 바람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능숙하지 못한 양육의 반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 원만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언제나 원만하지 않은 가족관계나 가족 간의 갈등의 주요요인이 된다. 의사소통 기술은 아이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 또는 그 이외의 사람들의 인생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1) 의사소통의 3가지 요소

(1) 시각적 요소

산만한 눈 맞춤은 대개 근심, 거짓, 부끄러움, 나태 혹은 당황 등의 부정적 감정 표현 방법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지나치게 응시하는 것도 좋지 않다. 하지만 똑바로 상대방을 응시할 필요가 있으며 처음에는 상대의 이마나 입 혹은 볼 등으로 눈길을 주어가면서 서서히 눈 맞춤을 늘려 나갈 수 있다.

상대방과의 적당한 거리 유지도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주려면 약 0.5미터 떨어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한다. 팔을 뻗으면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다.

얼굴 표정도 중요하다. 종종 메시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얼굴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몸동작과 자세도 중요하다. 얼굴이나 어깨 등을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마주 대하는 자세는 공격적인 자세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다. 가장 좋은 몸가짐의 방향은 정면으로 대하되, 약 10도내지 30도쯤 빗겨 서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는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도 너무 직접적인 응시를 피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2) 음성적 요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며 목소리의 크기는 감정에 크게 좌우된다.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게 말하면 자기 의사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는 습관이라면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관계없이 공격적인 것이 될 수 있고, 화를 내고 있다거나 야비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말하는 속도에 따라 빠른 말투는 신경질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고, 지나치게 머뭇거리는 말투는 메시지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보통 속도는 1분에 1백 단어내지 2백 단어를 말하는 것이다. 말을 자꾸 반복하여 지루하게 만드는 ‘음’, ‘에’, ‘저’ 등과 같이 짧게 만드는 버릇도 없애야 한다. 음조와 억양을 적당하게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언어적 요소

언어사용의 중요성을 말한다. 문장을 끝맺는 문제로 분산된 문장이나 불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음이 안정되지 못했거나 정신이 혼란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완벽하고 분명한 생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문장을 끝맺기 힘들다면 여러 개의 간단한 문장들을 복잡하고 길게 구성된 문장보다 더욱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해 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말하기 전에 여러 차례 마음속으로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다.

3. 부모-자녀 의사소통 장애요인

부모와 자녀는 가족 내 위치나 역할이 서로 다르며, 세대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1) 부모-자녀 상호간의 수용결여

부모가 자녀의 정서 상태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모의 원하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자녀 역시 부모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부모를 비난 할 뿐 부모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단절되고 만다.

2) 세대 차이로 인한 단어사용의 차이

자녀들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대 간에 달리 사용되는 단어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3) 부모의 권위주의적, 독단적 태도

권위주의적이거나 독단적인 태도는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이며,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일 뿐이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게 된다.

4) 부모의 지속적인 불쾌정서 상태

자녀는 부모의 상태나 행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자녀가 자신의 잘못된 점이나 요구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부모의 상태를 살피게 된다. 부모의 가정이 나쁠 때에는 부모로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망설이게 된다.

5) 부모의 부정적 대화 방법

협박, 비난, 욕설, 조롱, 창피, 분노, 장황한 설교, 명령, 경고등의 부정적인 대화 방법은 자녀로 하여금 반발을 느끼게 하고 반항하게 만들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6)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자녀 자신의 편견

부모는 연장자로 생활경험이 많으며 양육자이기 때문에 부모 자신의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한다. 자녀는 부모를 이해 설득시키기 보다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단정 지어 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계속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된다.

7) 자녀의 자아긍정성 결여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기대목표에 부응하게 되면 자아긍정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자아긍정성이 낮아진다. 자아긍정성이 낮은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위축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불안의식이 유발되어 편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4. 부모-자녀 의사소통 촉진방안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용이나 이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수용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부모의 수용을 자녀가 느끼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1)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는 구체적 기술

(1) 비언어적 수용방법으로 자녀가 이야기 해올 경우 부모가 침묵을 지키며 수동적으로 경청하는 것이다.

(2) 언어적 수용방법으로는 말문을 열도록 하는 말이나 계속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렇구나”, “음~”, “그래”, “아, 그러니?”, “좀 더 듣고 싶구나”, “네 의견이 흥미 있구나” 등이다.

(3) 적극적인 경청 방법으로 자녀의 감정 상태를 피드백해 주는 것이다. 부모가 적극적인 경청을 하기 위해 자녀의 독특한 감정 상태와 감정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해야 하며,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적극적 경청은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 무패방법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갈등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자녀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 중 어느 한편이 이기는 방법을 피하고 부모-자녀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 효과적이다.

(1) 1단계 : 갈등의 확인과 정의

(2) 2단계 : 가능한 모든 해결방법의 모색

(3) 3단계 : 가능한 모든 해결방법에 대한 평가

(4) 4단계 : 가장 좋은 해결방법의 결정

(5) 5단계 : 결정된 해결방법의 실천

(6) 6단계 : 해결방법의 실천과 그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

5. 제언

가족 중 부모-자녀간의 갈등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라고 했다 그 만큼 어떻게 의사소통하느냐가 중요하고 상대를 잘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일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구광현, 김영숙, 이수남, 이은상, 최양미 공저(2002). 부모역할과 자녀교육. 교육과학사
김인자(1997).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8가지. 사람과 사람
홍경자, 노안영, 차영희, 최태산 공역(2007). 부모코칭 프로그램: 적극적 부모역할 Now!. 학지사

애착형성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8.8.20.~2018.8.31
장 소	놀이심리지원실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애착형성

1. 애착이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 따라서 영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에 대해 보호자가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영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아이의 울음도 보호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음. 2개월이 지나면 울음에도 분화가 생기고, 아이의 울음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울음을 아이의 언어라 생각하고, 패턴을 민감하게 잘 살펴준다면, 요구에 더 잘 반응할 수 있음. 영아기에는 양육자의 적절한 반응을 통해 엄마와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임. 이 신호에 대해 양육자가 재빠르고 정확하게 눈치 채고 요구에 적절히 반응해 주면, 아이는 이러한 보호와 사랑, 접촉의 경험으로 세상이 자신을 환영하는 곳임을 인식하게 되고 주 양육자와 특별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됨.

1-1. 애착형성의 3요소

① 민감성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요구를 잘 포착 함.

② 반응성

아이가 울면 바로 반응하고, 적절하게 반응함.

③ 일관성

아이가 엄마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같은 신호에 일관적인 반응함.

2. 애착의 종류

모와 영아 사이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은 가정마다 다름. 안전된 애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영아를 수용해 주고 그들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어야 함. 애인스워스 등은 세 가지의 애착 유형을 제시함.

2-1. 안정애착

아이의 요구에 일관된 태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준 어머니의 아이들에게 0%정도의 아이들에게 나타남. 먼저 안정애착을 맺은 아이의 경우, 낯선 방이지만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음. 엄마가 함께 있으므로 엄마를 안전기지로 삼아 주변을 탐색함.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면 당황하고 불안해 함. 안전 기지였던 엄마가 사라지면 불안함을 느낌. 하지만 엄마가 돌아오면 위로를 받고, 다시 안정을 되찾고 놀이를 시작함. 이 경우는 자신이 불안함을 느끼면 엄마가 자신의 요구에 반응을 잘 해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고 있는 경우임. 안정애착을 맺은 경우 양육자가 규칙적이고 신뢰성 있게 아이들의 신호에 반응을 해 준 경우임.

2-2. 회피애착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민감하게 반응해주지 못했을 때 형성된 애착유형임. 즉, 아이가 엄마를 통해 세상에 대해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있음. 엄마가 없고 혼자 남겨진 상황은 매우 낮설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지만 어떤 아이는 엄마가 사라져도 표정과 감정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임. 그 후 엄마가 돌아왔을 때도 엄마를 보고도 반가워하거나 다가가는 반응을 하지 않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엄마가 없어져도 울지도 않고, 혼자 잘 놀면 편하겠다, 쉬운 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이의 마음은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애착 유형은 가정에서 양육자를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음을 학습하고, 어린 나이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생긴 경우임. 매우 불안함에도 엄마가 안아주고 진정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고, 엄마가 위로 대상이 못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2-3. 저항애착

엄마가 나가자 심한 불안감을 표현하며, 심지어 엄마가 돌아와도 쉽게 진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보호자가 미숙하거나 바쁘거나 무관심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을 때, 또한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에게 반응을 잘 해주지만, 피곤하거나 힘들면 그것을 아이에게 표출하거나, 짜증을 낼 때 형성 됨. 이러한 보호자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표현을 경험한 아이들은 예상할 수 없는 엄마의 태도에 더 불안해하고 화를 표출하게 됨. 만약 엄마가 우는 아이에게 어떨 때는 반응을 보여주다가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는 식으로 비일관된 태도를 보인다면, 아이는 불안하고 화가 날 때 과장된 애착행동을 보일 수 있음.

3. 안정적 애착형성

12~18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와 양육자와의 관계, 더 정확히는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한 양육자의 태도에 따라 아이의 정서와 애착관계는 달라짐.

3-1.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보호자의 특징

영아 가까이에 머물며, 영아의 요구를 민감하게 살핌.

영아의 요구를 민감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영아 가까이에 있는 것이 중요함. 영아가 언제, 어떤 요구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위함.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아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함.

영아의 요구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응대함.

아이에게 잘 반응해 주고, 아이와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보호자의 마음가짐임. 일하고 돌아와 몸이 너무 힘들어도,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잠도 못자고 피곤해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아이의 요구에 귀 기울일 여유를 주며, 즐겁게 반응해 줄 수 있게 함.

영아의 요구 충족에 함께 행복을 느끼고 공감함.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공유하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영아와 서로 교감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함.

3-2. 아이와 상호작용 팁

말걸기

언어적인 자극을 의미함. 아이가 목을 들고, 뒤집고, 안고, 서는 것처럼 크고 작은 성취에 대해 칭찬해 주고, 엄마의 행동 및 아이의 요구에 대해 언어로 설명해 주고, 웅얼이 등에 반응해 주는 것들이 해당됨.

스킨십 & 미소

비언어적인 자극에 해당됨. 안아주고, 쓰다듬고 뽀뽀하고, 보호자가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함. 스킨십 이외에도 온화한 표정 짓기, 눈 마주치고 웃어 주기 등 작은 행동이 아이에게는 보호자에 대한 안정과 신뢰를 느끼게 함.

언어적, 비언어적 자극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놀이

하루 10분 공 굴리며 놀기, 무릎에서 말 태워 주기, 하루 5분 마사지 해주기, 간지럽히며 장난치기 등 간단하고 어렵지 않지만 놓치기 쉬운 아이와의 순간순간의 소통이 아이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됨.

3-3. 영아와의 의사소통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영아들은 대부분 잘 웃고, 잘 놀고, 호기심이 많아 탐색적이고 사교적이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함. 그래서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며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즐기는데, 이런 과정이 영아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줌. 영아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아이의 탐색 행동을 미소 지으며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함. 보호자는 아이가 무엇인가를 시도하려 할 때, 가능한 아이의 의도를 지지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이의 의도에 대한 보호자의 생각을 말하는 의사소통을 해야 함.

영아는 말보다는 눈 맞춤, 손짓, 얼굴 표정 등으로 먼저 의사소통을 시작하므로 보호자는 영아와 눈을 맞추고 말하며, 영아와 놀이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사소통하여야 함.

엄마의 언어자극이 적어도 아이의 단어 인식 속도에는 영향을 줌.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정도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더 맞추어야 함.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소통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아이의 행동을 바라만 보지 말고, 그 행동을 친절하고 다정한 톤으로 말로 풀어 설명해 주고, 아이에게 다양한 어휘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함. 언어자극에도 언어의 톤과 상호작용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3-4. 영아와의 스킨십

아이의 웅얼이에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칭찬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그것이 칭찬받을 일임을 깨닫고 더 높은 빈도로 더욱 질 높은 웅얼이를 할 수 있게 됨. 이는 7개월 정도의 어린 아이도 칭찬의 체계를 이해하고, 스킨십만으로도 아이의 언어 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웅얼이에 웃으며 화답하고, 칭찬하는 스킨십을 해주며,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붙이고 애정으로 돌봐주는 반응으로도 아이의 언어를 발전시킬 수 있음.

4. 결론 및 제언

- ① 신체 접촉을 자주 한다.
- ② 아이의 욕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주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다.
- ③ 아이의 문제가 발생 시 아이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한다.
- ④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 ⑤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가르친다.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
- ⑥ 일관된 양육태도를 갖는다.

총 6가지를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할 경우 모와 아이 간의 애착관계가 두들어 질 것임.

참고문헌

http://www.mogef.go.kr/kps/pec/kps_pec_s001d.do?mid=mda777&bbtSn=706121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8년 12월 19일 ~ 12월 24일
담당자	작업치료사 임주성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가정에서의 아동관리

우리는 다양한 일상생활을 수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삶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필요와 목적에 맞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수준이 요구된다. 장애아동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동기의 일상생활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은 보호자의 도움을 바탕으로 활동에 참여를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기술을 습득하며, 운동계획을 조절하며 마침내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도움을 통해 일상생활을 시작하고 진행하는데, 올바르게 못한 도움이 제공될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참여가 어렵게 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도움이 올바르게 제공되면 아동의 기능적 수준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적절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신체적 근긴장도 조절과 자세 유지 등을 통해 좀 더 상위의 활동 참여가 나타나게 된다.

1. 먹기(Eating and Feeding)

먹기는 일상생활에서 생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인 식사를 통한 영양공급 뿐만 아니라, 입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구강관리까지도 같이 제공하게 된다.

1) 식사 자세

영아의 경우, 보호자가 안고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동의 입에 음식물을 흘리지 않고 넣어주기 위해 아동을 눕히듯 안고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음식물을 흡인하여 사례에 걸릴 수 있다. 이때는 보호자가 안고 있는 팔을 이용하여 머리를 세워주는 것이, 삼킬 때 구강의 압력을 높여 음식물을 먹기 쉽게 하는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다. 또한 뒤로 뺀치는 모습을 보이는 아동이라면, 무릎 밑에 보호자의 허벅지를 놓아 무릎이 구부러진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것이 뒤로 뺀치는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앉기가 가능한 아동의 경우,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며, Feeder seat와 같은 보조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어떠한 경우에도 머리가 뒤로 젖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제공방법

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아동의 식이능력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안전한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유식과 진밥, 볶음밥 등의 점도를 통한 조절방법이 있다. 음식물을 보호자가 입에 넣어줄 때에는 혀의 중앙부에 음식물을 제공하며, 혀를 살짝 눌러

음식물이 들어왔음을 알리는 것이 삼킴 반응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제공하는 음식물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을 입에 넣지 않도록 하며, 식사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원시반사가 소실되지 않아 입에 물건이 들어가면 물어버리는 아동도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하여 구강 내로는 손을 넣지 않도록 하며, 도구를 물었을 경우에는 편안하게 아동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쉽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 침흘림(Drooling)

식사시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침을 자주 흘리는 아동이 있다. 침을 흘리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과정 중의 하나로, 성장하면서 구강조절능력이 향상되면 침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혀나 입술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나 목을 가누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흘림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한경우의 탈수나 피부의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가 혀와 입술의 움직임을 연습하고, 입 안에 침이 있는 것을 아동이 인식하여 자주 삼키게 하는 방법으로 침흘림을 줄일 수 있다.

4) 구강감각자극 방법

보호자가 얼굴과 입술 주변, 그리고 구강 내에 대한 감각자극을 제공하여 아동이 음식물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병원에서의 Suction 경험이나 역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아동의 경우, 구강 내로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기에, 먼저 좋은 이미지로 인식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피부온도와 유사하게 손의 온도를 조절하고, 얼굴과 입 주변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고, 구강 내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입술과 잇몸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방법으로 예민한 감각반응을 줄일 수 있다.

2. 옷 입고 벗기(Dressing)

옷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이자 안전 및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아동의 옷 입기는 보통 보호자가 도움을 제공하지만, 아동의 참여를 유도함으로 독립적인 의복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1) 상의 입고 벗기

아동이 상의를 입고 벗는 것을 연습할 때는 한 치수 큰 옷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연습 시에는 방에 앉아 벽에 기대어 연습하는 것이 좋으며, 몸이 자주 흔들리는 아동의 경우에는 구석에서 연습하는 것이 등과 좌우를 기댈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상의를 입을 때에는 움직임이 어려운 쪽을 먼저 넣고 다른 손을 넣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쉬운 손을 먼저 넣게 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음 팔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수행이 되게 된다. 혼자서 입을 때는 팔을 먼저 끼우고 머리 위로 넘겨서 입는 방법이 몸통을 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벗을 때에도 잘 움직이는 팔을 먼저 빼고

이후 다른 손을 꺼내는 것이 좋다. 아동의 경우, 입고 벗기 활동에서 시각적인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의를 입고 벗는 것이 하의를 입고 벗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티와 셔츠 등의 형태에 따라 전체 구성을 하나씩 나누어 연습하고 차츰 도움의 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하의 입고 벗기

하의는 아동이 취할 수 있는 자세에 따라 옆드리거나 앉아서, 서거나, 잡고 서서 입고 벗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옆드린 자세에서는 네발 기기 자세에서 한 쪽씩 무릎까지 내리고 돌려 앉아서 한 쪽씩 벗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한 쪽씩 무릎까지 내리며 마지막에 발을 이용하여 벗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입을 때에는 기대어 앉아서 바지를 벌리고 다리를 집어넣은 뒤, 무릎까지 올리고 자세를 네발 기기로 바꾸어 허리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면, 발목에서 허리까지 올려서 입도록 하며, 누워서는 몸을 좌우로 굴러가며 허리까지 올리도록 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자세조절

아동의 자세조절은 다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이며, 올바른 자세는 신체적 근긴장도 이상 및 불균형을 일으켜 적절한 활동 수행을 방해하게 된다.

1) 바로누운자세(Supine position)

누운 자세에서는 바른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양쪽 팔이 대칭이 되게 하며, 머리-목-몸통-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시켜 주어야 한다. 이때 베개, 쿠션, 수건 등을 이용하여 받혀줌으로써 자세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누운 자세에서는 병적 반사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자세로써, 근긴장도의 이상이 있을 경우, 머리와 팔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면 다리를 꼬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팔과 다리가 뻗히는 비정상적인 반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주며, 어깨도 앞으로 모을 수 있도록 어깨 아래를 살짝 받혀주는 것이 좋다. 뒤로 뻗는 모습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다면, 고개를 살짝 숙여지게 하거나,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구부려 주는 등의 굽히는 동작의 요소를 넣어주는 것이 긴장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옆드린 자세(Prone position)

옆드린 자세에서는 굽힘근의 긴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를 들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팔꿈치가 어깨 바로 아래나 살짝 앞쪽에 위치하도록 쿠션이나 수건을 말아서 넣어주는 것으로 머리를 들기 쉽게 유도할 수 있다. 옆드린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움직이며 바깥쪽으로 살짝 돌리면 팔꿈치를 좀 더 수월하게 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아

동은 엎드린 자세에서 물건을 조작할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게 된다.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이 굽혀지며 엉덩이가 들린다면, 골반을 살살 흔들어주어 긴장도는 낮추어 주는 것이 좋다.

3) 옆으로 누운 자세(Side-lying position)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도 뒤로 뻗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머리를 가운데로 오게 하며, 뒤에 지지물을 놓아 젖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어깨는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자신의 손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양다리 사이에는 쿠션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 위쪽 다리는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이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아동의 시선이 살짝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게 하면 장난감이나 도구를 이용하면 뒤로 젖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의자에 앉은 자세(Sitting position)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는 엉덩이가 좌석 깊숙이 들어가 골반과 등이 수직으로 세워지고, 다리가 서로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리와 엉덩 관절의 뻗힘이 있을 경우 좌석에 앉지 못하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불안정성으로 인해 근긴장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며, 이동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쉽다. 앉은 자세에서 체간의 조절이 어렵다면, 벨트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고정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며, 다리 사이에 쿠션을 통해 다리가 서로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앉았을 경우, 고개와 몸통을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좌석의 경사를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 펴근의 긴장도를 높이면 상체를 좀 더 쉽게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4. 결론

장애아동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스스로 신체를 조절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또래 아동에 비해 더욱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비교적 많은 양의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일상생활에서 다루고 도와주는 과정 속에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게 되면 도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던 활동에도 참여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이후의 시도나 참여에도 제한을 보이게 된다. 가정에서 아동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아동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도와주어야 할 부분을 나누고, 도움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도움을 주는 보호자의 신체와 여건도 고려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도, 보호자도 서로가 같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일상생활 수행과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이택영 외(2005). Activity of Daily Living. 탐메디오피아
2. 박창일 외(2008). 재활의학. 한미의학
3. 정진엽 외(2016). 알기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4. 박수현, 정병록(2008). 작업치료사를 위한 임상지침서. 군자출판사
5. 대한연하재활학회(2012). Dysphagia Rehabilitation and management of dysphagia
6. Nadine O'Sullivan(1990). Dysphagia Care. Cottage square(USA).

뇌성마비에서의 보틀리눔 독소 치료방법



팀 명	기능향상지원 2팀
일 시	2018년 07월 02일~2018년 07월 27일
장 소	서면교육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뇌성마비에서의 보툴리눔 독소 치료방법

1. 보툴리눔 독소란 무엇인가?

보툴리눔독신타입A (보톡스)는 뇌성마비 소아에서 가장 흔한 경직성 질환인 침족(발가락으로 걷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유형의 치료법입니다. 침족은 비복근(무릎 아래 다리 뒤쪽의 장딴지의 근육)의 경직에 의해 생기며 이로 인해 보행 중 어린이가 뒤꿈치를 땅에 던지 못하게 됩니다. 보툴리눔독신타입A는 문제 근육과 신경사이의 신경전달을 막아 근육의 지나친 긴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보톡스는 근육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직을 치료하기 때문에 발육 중인 근육이 보다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직된 근육을 성장시킴으로써 관절구축의 발생확률이 감소하며 수술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어린이가 정상적인 운동을 스스로 발전시킬 기회는 증가하게 됩니다. 보톡스는 안검 경련 안면경련 사시 경부근 긴장이상과 같이 지나친 근육수축에 의해 생긴 다른 질환들의 치료에 이미 사용되어 왔습니다.

2. 보툴리눔 독소는 어떻게 투여되나?

보톡스를 경직된 뇌성마비 어린이에게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한 검사를 하여 적당한 환자에게만 보톡스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치료할 팔과 다리에 관절구축이 진행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치료 결과를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해 각 어린이들에게 맞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보톡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톡스는 심한 경직을 보이는 근육에 소량을 직접 주사하게 됩니다. 개별 근육마다 몇 군데씩 주사를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에는 경직된 근육이 이완됩니다. 주사를 놓기 약 1시간 전에 국소 마취 크림을 바르지만 너무 어리거나 주사를 아주 싫어하는 경우 또는 주사투여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진정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전신마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사 효과가 떨어질 때쯤 보톡스를 재 주사하는데 보통 3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보톡스 주사 후 물리치료의 중요성 보톡스를 주사한 후에는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운동과 훈련이 필요한 근육을 정확히 선택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보톡스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약효를 지속시킵니다. 부모님은 어린이가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보톡스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수술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의 구축과 변형의 정도에 따라 보조기의 선택이 달라지는데 근육을 늘려주는 특수보조기는 보톡스 주사의 효과를 유지시키고 근육의 운동 조절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다리 부분에 사용할 경우에 그 효과는 커집니다. 보행훈련을 열심히 하면 어린이에게 더 이상 보조기가 필요 없을 정도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주사의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에게 순차적으로 고정대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뇌성마비에서 보툴리눔 독소의 적응증

(1) 상지(Upper extremity)

- 1) Thumb-in palm
- 2) 손목 굽힘구축(Wrist flexion)
- 3) 상완 회내(Forearm pronation)
- 4) 팔꿈치 굽힘 구축(Elbow flexion)
- 5) 어깨 내회전/내전 구축(Shoulder internal rotation and/or adduction)

(2) 하지(Lower extremity)

- 1) 걷는 동안 침착변형(dynamic equinus)이 계속되는 경우에 종아리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 2) 걷는 동안 계속 무릎 굽힘 각도(dynamic knee flexion angle)가 20도 이상 지속될 경우에 대퇴사두근(hamstring)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 3) 앉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고관절 내전근(hip adductors)과 대퇴사두근(hamstring muscle)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 4) 국소적 이긴장증이 있는 경우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 5) 수술 전 진단적 목적으로 후경골근(tibialis posterior)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 6) 수술 전 후로 통증 치료를 위해 투여할 수 있습니다.

4. 보툴리눔 독소의 비적응증

- 1) 구축이 이미 진행된 경우(Fixed contracture)
- 2) 약물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Allergy to medication)
- 3) 과도한 근경축이 있는 경우(Excessive spasticity)
- 4) 신경근 질환이 있는 경우(Neuromuscular disease)
- 5) 현재 복용중이 약물이 신경근 기능에 방해가 되는 경우(Concurrent use of drugs that interfere with neuromuscular function)
- 6) 임신 중이거나 수유중인 여성(In female patients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

5. 보툴리눔 독소의 적정 용량은?

Boyd와 Graham(1997)에 의하면 뇌성마비 소아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투여한 후 12~72시간 내에 강직은 감소하기 시작하며 효과는 3~6개월 지속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치료 간격은 6~12개월입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과량이 투여되면 임파액이나 정맥혈을 통해 주위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역으로 축삭을 따라 중추신경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독소는 Dysport의 경우에 Kg당 30단위를 넘지 않는 것이 좋고 BOTOX인 경우에 Kg당 12단위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술자의 경험에 따라 근육의 부피에 따라 전신적 부작용을 줄이고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량을 결정하여

투여하고 있습니다. Baker등(2002)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리의 침착변형(equinus deformity)에 대해 Dysport의 경우 kg당 10~30단위를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kg당 20 단위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오랫동안 보툴리눔 독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자는 적절한 용량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 보툴리눔 독소의 부작용

(1) 국소적 부작용

국소적으로는 너무 과량이 투여되어 발생하는 부작용이 대부분으로서 국소적 위약감이 대표적 부작용입니다. 과량이 투여되면 근막을 따라서 보툴리눔 독소가 이웃 조직으로 파급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소적으로 적은 양으로 여러 군데를 주사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국소적 부작용으로 국소적 통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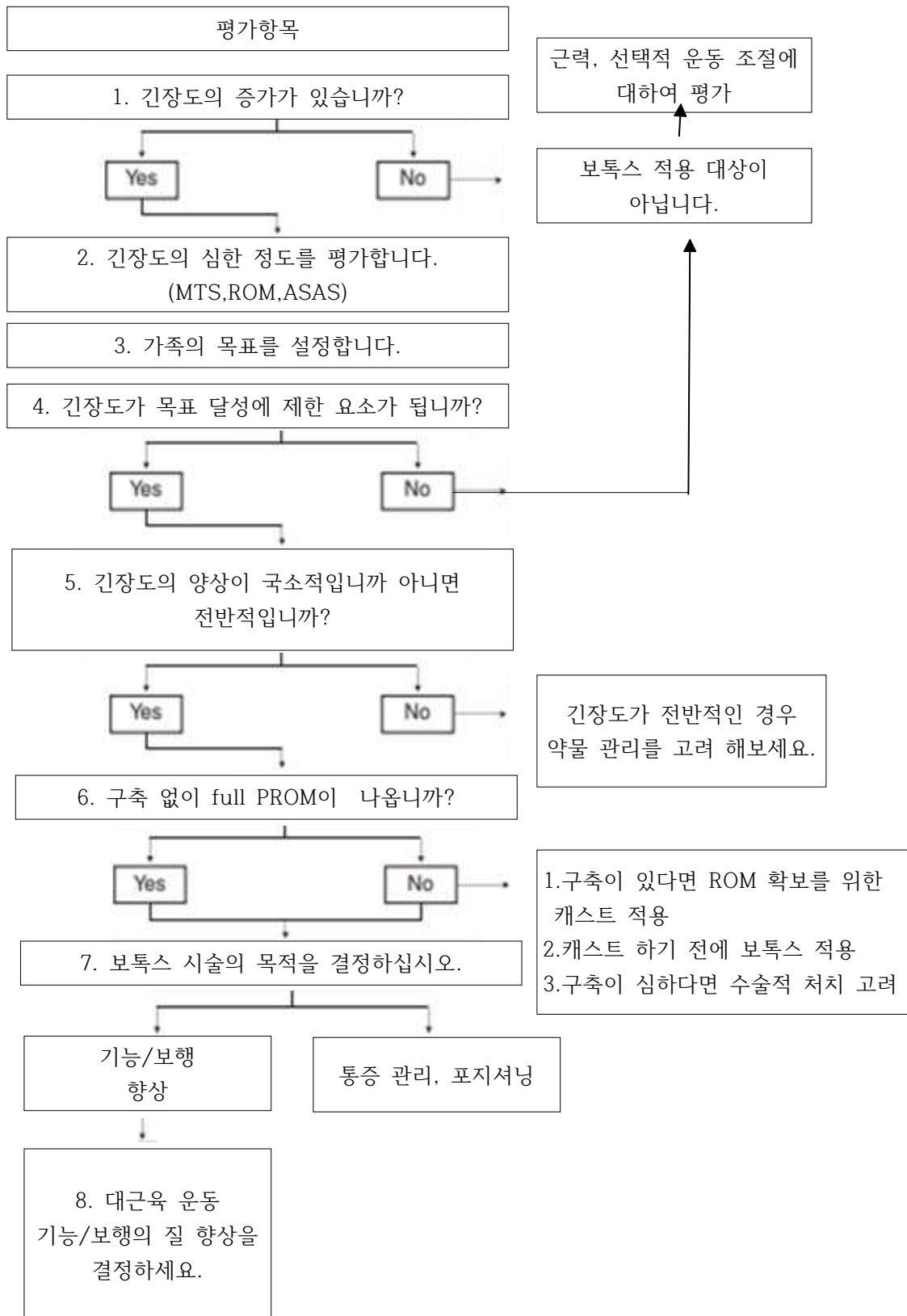
(2) 전신적 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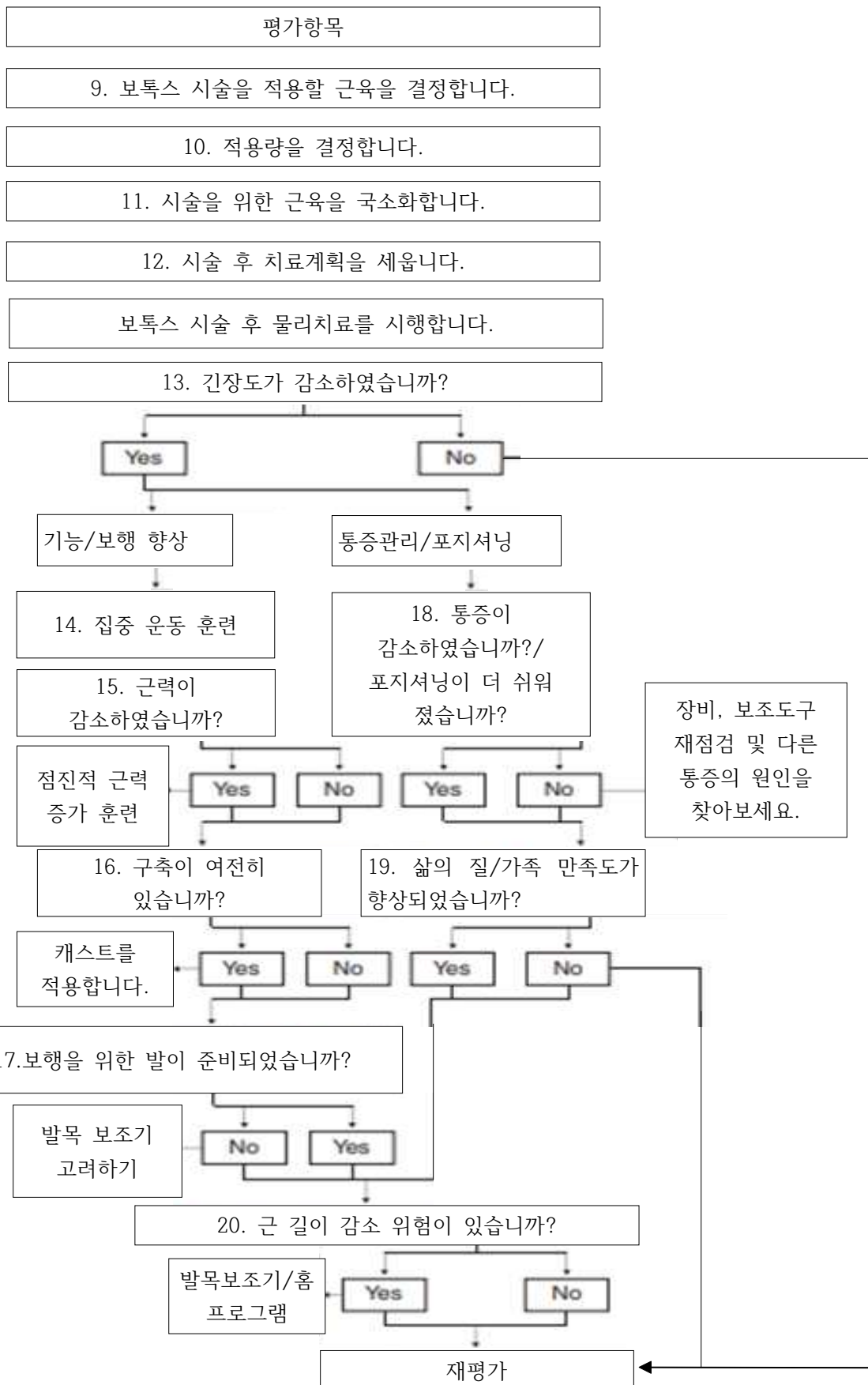
약물이 과량으로 투여될 때 전신적 위약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간과하기 쉬운 전신 부작용이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를 투여한 뇌성마비 어린이에게서 가끔씩 약물 투여 초기에 요실금과 변실금이 관찰됩니다. 과량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그 명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세틸콜린에 의해 조절되는 괄약근이 적은 양의 보툴리눔 독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하곤란이 있는 경우 간혹 주사 후에 연하곤란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나 연하곤란이 없더라도 SCM에 주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조심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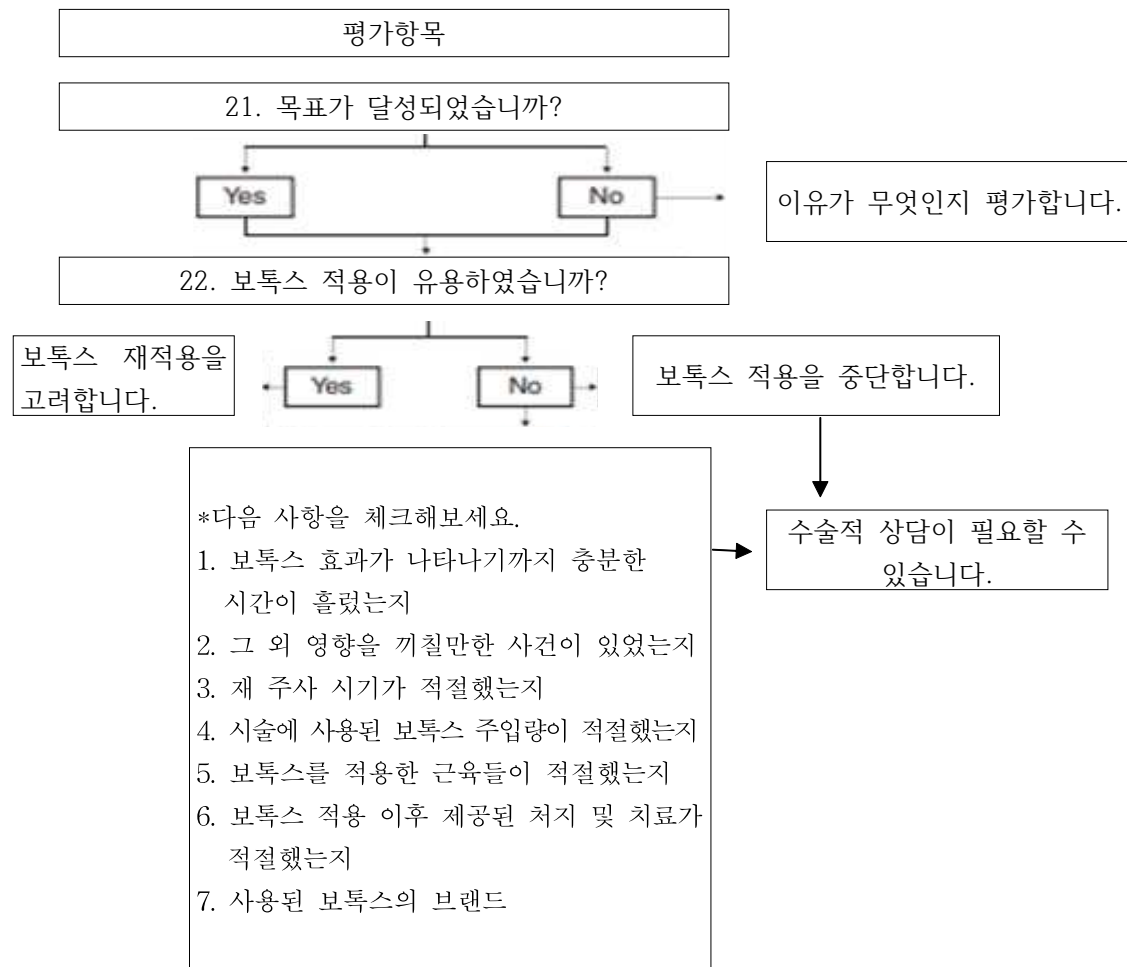
(3) 항체 형성

뇌성마비 환자에서는 다른 질병 유형보다 높은 용량의 보툴리눔 독소가 투여되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항체가 형성되면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항체 형성율이 성인에서는 3~1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아직 어린이에게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항체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은 용량을 사용하고 투여 간격을 3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보툴리눔 독소 적용 알고리즘







8. 결론

뇌성마비는 미성숙한 뇌에 가해진 비진행성 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세와 운동의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뇌성마비 환자의 하지 기능은 이긴장증, 경직, 근력의 불균형 및 감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장애를 보이며 이에 대한 치료로는 신전운동, 근력강화운동, 조화운동 등의 물리치료와 보조기 처방, 수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 주사도 근긴장도를 감소시켜 경직성 뇌성마비의 기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문제 근육과 신경사이의 신경전달을 막아 근육의 지나친 긴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경직된 근육을 성장시킴으로써 관절구축의 발생확률이 감소하며 수술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어린이가 정상적인 운동을 스스로 발전시킬 기회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소적으로는 너무 과량이 투여되어 위약감, 국소적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가끔 보툴리눔 독소를 투여한 뇌성마비 어린이에게서 가끔씩 약물 투여 초기에 요실금과 변실금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하 곤란이 있는 경우 간혹 주사 후에 연하곤란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툴리눔 독소 주사 치료를 결정할 때 모든 부작용에 관해 숙지하고 이후 관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계획을 세운 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전북대학교병원 보톡스 클리닉 홈페이지.
2.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홈페이지.
3. S.C.Love, I. Novak, M. Kentish, K. Desloovere, F. Heinen, G. Molenaers, S. O'Flaherty and H. K. Graham. (2010). Botulinum toxin assessment, intervention and after-care for lower limb spasticity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international consensus statement. European Journal of Neurology 2010,17(suppl.2):9-37
4. 임승윤, 김미정, 한승훈. (2008). 보툴리눔 독소의 희석 용적에 따른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의 변화. 대한재활의학회지: 제 32권 제 3호.

건강한 대화가 따뜻한 관계를 만든다



팀 명	가족문화지원
일 시	2018년 4월 17일 10:30~12:00
장 소	강당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건강한 대화가 따뜻한 관계를 만든다

1.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①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함.
- ② 의사소통을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됨.
- ③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자주적이며, 책임감 있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음.
- ④ 의사소통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함.
- ⑤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어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음.

2. 의사소통 방식

의사소통 :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로 이루어진다.

1) 언어적 방식

- 말을 수단으로 하여 직접 정보를 교환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두적 의사소통
- 메모, 편지, 보고서, 지침, 공문, 안내서 회람 등의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문서 의사소통이 있다.

* 언어적 메시지의 형태

- ① 대화적 형태 :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대화
- ② 추구적 형태 : 어떤 변화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대화 형태로서 설교, 비난, 충고, 방어, 경쟁, 요구 지배, 칭찬, 판매, 주장 등에 쓰인다.
- ③ 반영적 형태 :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는 형태로서 목소리가 침착하게 되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약간은 주저하는 듯한 언어적 메시지를 보낸다.
- ④ 대면적 형태 :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개방적으로 표현 한다.

2) 비언어적 방식

- 비언어적 메시지는 보통 행위로 전달되는 메시지로 언어적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이다.
- 언어적 메시지는 좀 더 분명 하지만 비언어적 메시지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경우가 많다.
- 신체아동, 자세, 몸짓, 표정을 통한 신체 동적 형태, 접촉을 통한 촉감적 형태, 냄새를 통한 후각적 형태, 서로의 위치 간격을 통한 공간적 형태, 의상이나 장식을 통한 인공적 형태로 분류되기도 하고 의복착용, 얼굴과 눈의 표정, 자세, 몸짓, 접촉, 목소리, 공간성, 환경 등으로 분류 한다.

- ① 비언어적 메시지는 우리가 말한 언어적 메시지를 확인하게 하고 보충하게 한다.
- ② 비언어적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의 모순을 드러나게 한다.
 - 우리말이 진실한 내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이율배반적인 메시지가 전달된다.
- ③ 비언어적 메시지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④ 비언어적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를 조절한다.
 - 예) 상대방이 말을 할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띠거나 해서 상대방이 말을 계속하게 할 수 있고, 고개를 젓거나 손을 휘두르거나 화난 표정을 지어 상대방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있다.
- 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대신해 준다.
 - 예)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대신 포옹을 하거나 미소를 띠거나 사랑의 마크를 그려 보이거나 해서 사랑의 표현을 행동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⑥ 비언어적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를 반복해 주어 메시지를 강조해 준다.

3.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동	
태도		비효과적	효과적
	비배려	제1영역 학대적 관계	제2영역 조작적 관계
	배려	제3영역 오해 관계	제4영역 긍정적 관계

- 제1영역은 학대적인 관계를 나타 낸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도 없고 효과적인 행동도 보여 주지 않는 형태이다.
- 제2영역은 조작적 관계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없으면서 효과적인 행동만 취하고 있는 것이다.
- 제3영역은 오해관계로 배려하는 태도는 있으나 기술이 없어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형태이다.
- 제4영역은 긍정적이고 서로 장존중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이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

- 첫째 : ·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역기능적인 가족은 이중적 메시지를 많이 사용 한다.
- 예) 어떤 사람이 자기는 처음 보는 사람과는 대화를 잘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만나는 시간 내내 혼자서만 이야기 한다든지, 마음속으로는 화가 무척 나 있으면서도 말로는 ‘나 화 안났어’ 라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 이다.

- 둘째 :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준다.
 - ① 적극적으로 경청 한다.
 - ② 주의가 산만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거나 응수하지 않는다.
 - ④ 말하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질문을 사용 한다.
 - ⑤ 상대방이 말한 것을 요약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신속히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 셋째 :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
- 넷째 : 실제적인 대화를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을 익힌다.

4.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원리

- ① 의사소통은 간결한 문장과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함.
- ② 의사소통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③ 의사소통은 알맞은 시기를 선택해야 하며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됨.
- ④ 의사소통의 양은 적정량을 넘으면 됨.
- ⑤ 의사소통의 메시지가 부모-자녀 사이에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함.
- ⑥ 부모와 자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차원의 의사소통을 해야 함.
- ⑦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관점과 수용태도에 의해 결정됨.

5.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해 요인

◆ 파괴적시지⇒파괴적 메시지가 대화 스타일로 되어 버린다거나 적합하지 않은 때에 쓰인다거나 혹은 너무 빈번히 쓰이는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대화방법

너는 반드시 (꼭)...해야 한다	명령·지시·요구	⇔	저항, 공포, 말대꾸
만약...않으면...그때는...	경고·권고·협박	⇔	원망, 분노, 저항
...하는 것은 네 책임이다.	훈계·설교	⇔	죄책감, 방어태세
내 생각에는...	충고·해결책 제안	⇔	자녀에게 능력이 없음을 시사
그래... 그렇지만... 문제는...	설득·강의·가르침	⇔	방어적 태도, 무력감, 열등감
너는 게을러서...	비판·비난	⇔	대화 단절
너는 항상 잘하니깐...	칭찬·동조·찬성	⇔	부담감, 감시를 받는 느낌, 명령에 따를 것을 기대
이 울보야! 그래 너 잘났다.	비웃기·욕설	⇔	부정적 자아상
너는 그냥 귀찮을 뿐이야.	분석·진단	⇔	왜곡이 두려워 대화를 꺼림
기운 내! 나아질 거야.	동정·격려	⇔	이해부족이라고 느낌
왜? 누가? 어떻게?	캐묻기·조사하기	⇔	답하는 동안 문제의 방향을 잃게 됨
즐거운 일이나 생각하자.	화제전환·주의돌리기	⇔	대화보다 회피방식을 암시

6. 평가 및 개선안

(1)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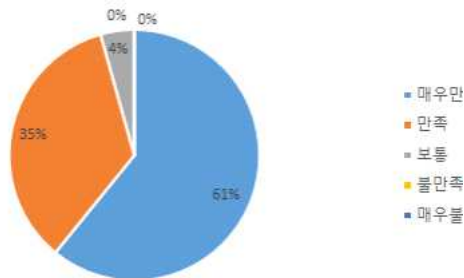
부모역량강화를 성과목표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교육 후 만족도 및 욕구조사 설문지를 통하여 만족도문항 4점 이상에 대한 성과지표를 측정하였음. 총 23명 중 23부를 회수하여 100%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교육내용’ 22명(96%), ‘긍정적인 의사소통 도움’ 22명(96%), ‘가족 간의 역할이해’ 23명(100%), ‘전반적인 교육만족도’ 23명(100%)으로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를 통해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담당자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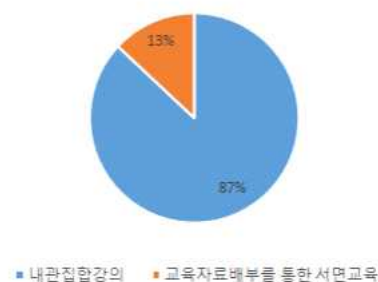
- ① 지원 사업을 통한 강사비지원으로 장애부모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 ② 복지관 인근 특수학교 및 학급, 장애인담어린이집 등에 외부공문을 발송하여 복지관 미이용부모참여가 높게 나타남.
- ③ 2월 가족지원사업욕구조사를 통하여 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화요일 오전으로 시간을 조정하였고 이에 부모참여가 높게 나타남.
- ④ 맞벌이부모의 증가로 인하여 집합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점차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계획, 준비하고자 함.

(3) 만족도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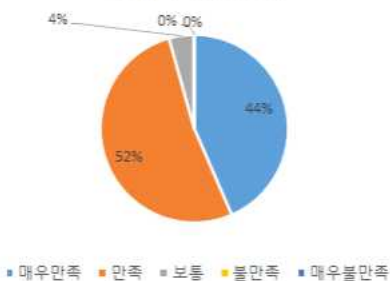
1. 본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부모교육방식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3. 본 부모교육이 가족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 본 부모교육이 가족 간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 본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6. 건의사항

- 장애아동 육아소통
- 감사님 좋으시네요, 또 오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 장애아동에 대한 성교육
- 장애가정에서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간의 소통 및 양육방법

6. 교육사진



행복소통, 학생진로설계



팀 명	가족문화지원
일 시	2018년 9월 11일 10:30~12:00
장 소	강당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행복소통, 학생진로설계

1. 목 적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2. 진행내용

- 1) 일 시 : 2018년 9월 11일(화) 10:30 ~ 12:00
- 2) 장 소 : 3층 강당
- 3) 대 상 : 장애·비장애 자녀를 둔 부모
- 4) 주 제 : 행복소통, 학생진로설계
- 5) 방 법 : 집합교육
- 6) 강 사 : 박현주(미래인재교육아카데미 소장)
- 7) 지 원 : 인천사회복지협의회(시민복지교육)
- 8) 홍보 및 접수
 - ① 일정 : 2018년 8월 13일(월)~9월 10일(월)
 - ② 방법

구분	내용	비고
관내	홈페이지, 관내게시판, iptv, 이용인안내문 배부	
외부	특수교육지원센터, 남동구 내 특수학급 팩스발송	
	장애인생활신문, 성당주보를 통한 홍보	기획홍보팀 연계

③ 접수

구분	인원	비고
전화	19	
내방	6	
온라인	1	네이버오피스 활용

3. 진행내용

1) 사업실적

세부사업명	횟수	연인원
부모교육	1	26

2)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09:30~10:00	강당세팅(책상/의자/빔프로젝터/다과류)	팀원지원
10:00~10:30	참가자접수	연명부준비
10:30~11:50	강의진행	PPT사용
11:50~12:00	질의응답	
12:00~12:30	강당정리	팀원지원

3) 업무분장

담당자		담당업무
가족문화 지원팀	박성묵	프로그램준비 : 지원사업신청 및 결과보고작성, 사진촬영, 간식구입, 강사섭외 등 프로그램진행 : 강당세팅, 참가자명단취합, 이용인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 등
	팀원	강당세팅지원

2. 평가 및 개선안

(1)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측정도구	자료수집방법	시기
부모 역량강화	부모교육 만족도 해당문항 4점 이상	만족도 설문	만족도 설문실시	교육종료 후

만족도설문지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협의회양식지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부모역량강화를 성과목표로 교육 후 만족도 및 욕구조사 설문지를 통하여 만족도문항 4점 이상에 대한 성과지표를 측정하였고, 총 26명 중 20부를 회수하여 88.4%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교육시간’ 18명(90%), ‘교육내용’ 19명(95%), ‘교육진행’ 19명(95%), ‘교육장소’ 18명(90%)으로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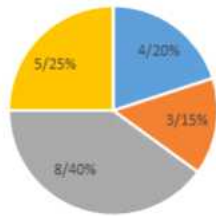
이를 통해 장애자녀를 둔 부모역량강화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담당자평가

- 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시민복지교육>신청을 통해 주제선정 및 강사 파견을 지원받아서 이용인과 부모들에게 소통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 ② 상반기에 교육이 선정되어 홍보를 8월초부터 실시하였으나 외부인원에 대한 신청이 미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외부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③ 전화신청과 더불어 네이버오피스를 활용한 온라인신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명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였음. 접수방법에 대한 논의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④ 집합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부모교육진행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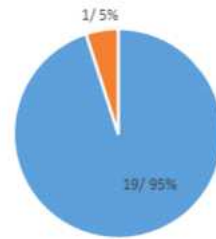
(3) 만족도설문결과

귀하의 연령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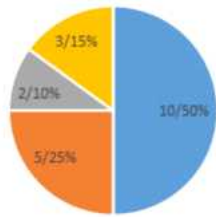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귀하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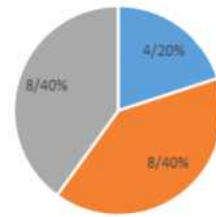
■ 남자 ■ 여자

귀하의 사회복지관련 교육 경험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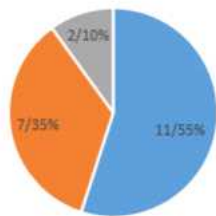
■ 없다 ■ 연 1회 ■ 연 2~3회 ■ 연 4회 이상

귀하의 소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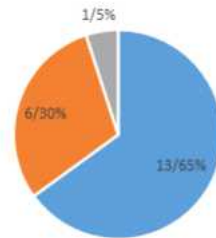
■ 봉사자 ■ 이용인 ■ 지역주민

교육시간은 충분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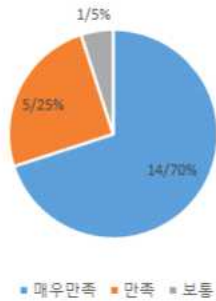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강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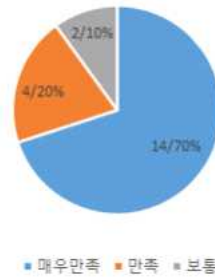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교육 진행은 어떠했습니까?



교육 장소는 어떠했습니까?



6. 건의사항

- 1) 강의를 자주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2)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3) 강사님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있었습니다.
- 4) 많은 지식을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3. 결 산

(단위 : 원)

품 명	추정액	정 산 액				비 고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다과비	150,000	개	25	2,800	70,000	
		회	1	47,240	47,240	
합 계	150,000				117,240	

별첨 1. 교육사진



자녀의 자립생활을 위한 부모의 역할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18년 3월 12일(월) 19시~20시 30분
장 소	별관2층 보람터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자녀의 자립생활을 위한 부모의 역할

->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

1) 함께 생각해 주세요

- ① 내 자녀의 꿈이 무엇일까요?
- ② 내 자녀는 2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 ③ 나(보호자)는 20년 후의 어떤 모습일까요?

2) 자립생활은?

- ① 모든 생활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삶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주변의 지원이 더해진 것
- ②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의 한 형태 : 발달장애인이 독립생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의미 내포)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립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받는 것이 자립생활이라고 볼 수 있음.
- ③ 능력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

3) 자립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

- ① 자기선택과 결정의 경험
- ② 부모와 가족은 장애나 위험요소를 핑계로 선택과 결정의 경험을 제한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4) 자립생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 ①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원 : 식사준비, 청소, 세탁, 정리정돈, 물건 사기, 외출, 손발톱 깎기, 머리 감기, 면도, 용돈관리, 안전 확보 등
- ② 연중생활과 관련된 지원 : 계절에 따른 옷 교체, 행정공공기관 이용 및 대응, 일자리 찾기, 금전관리, 건강관리 등
- ③ 자립과 연관된 지원 : 주택구입 및 계약, 결혼 등 가족구성

5) 부모님이 실천할 수 있는 것

- ① 자녀의 약점보다 능력과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 ② 자녀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세요(현실적인 기대).
- ③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 ④ 남녀 간의 에티켓을 가르치세요.
- ⑤ 자녀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주고,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그룹미술심리지원을 통한 행복한 ‘나’찾기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18.06.21.(목), 19:00~20:00
장 소	보람터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그룹미술심리지원을 통한 행복한‘나’ 찾기

1. 필요성

성인기 장애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요구(needs)를 가진 자녀로 인해 양육 과정에서 장애자녀 위주의 생활방식에 맞추어 지내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장애자녀가 아닌 보호자 자신만을 위한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시간, 취미생활이나 여가·문화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거나 양육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자녀 사이에 분리되거나 독립하지 못한 경우 즉, 자기관리, 금전관리 등과 같은 일상생활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난다.

만18세 이상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적응훈련반 보호자들과의 면담 및 부모회의에서도 출·퇴근 시 동행, 세면 및 샤워 시 보호자의 개입, 개인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연락 등 성인이 된 자녀와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보고 되었다. 상담 시 나타난 부모의 입장은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처럼 느껴진다고거나, 일상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 쉽게 분리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보호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일 없이 장애자녀 위주로 살아온 삶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된다. 보호자에게는 장애자녀와 분리하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 중 그룹미술치료는 개인의 성장과 통찰, 변화를 위해 미술의 비언어적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미술치료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하도록 한다. 이에 직업지원팀에서는 장애자녀 위주의 생활에서 벗어나 보호자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미술치료를 활용하여 2차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2. 목적

그룹미술치료를 통해 자신과 주변인에 대해 객관적 시각을 형성하고 보호자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목표

- 1) 외부강사를 활용한 보호자 심리지원 교육 실시
- 2) 보호자 간 정체성 및 존재감 발견과정에 대한 경험 공유

4.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9:00~20:00

5. 장소 : 별관 3층 직업적응훈련반 보람터

6. 참석자 : 직업지원팀 서비스 이용인 보호자 13명

7. 강사 : 미술치료사 임선영

8.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8:00~18:30	* 세팅	
18:30~19:00	* 출석확인 및 개별 면담	
19:00~20:00	* 부모교육 진행	
20:00~20:40	* 보호자 간담회	
20:40~21:00	* 뒷정리	

10. 평가

1) 전회 평가내용 반영 사항

- ① 부모교육 주제가 정해질 경우 사전에 주제를 알리고 참석을 유도할 것
⇒ 사전안내를 통해 참석을 유도하였으며, 계획대비 참석률 92.85% 달성함. (1명 불참)
- ② 주제에 따라 이용인의 상황이나 일상생활을 잘 알고 있는 강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도모할 것
⇒ 오랜 기간 동안 보람터 훈련생을 대상으로 미술심리지원을 진행 해 온 미술치료사를 강사로 활용

2) 운영평가

- ① 강의형태의 이론수업이 아닌 미술치료를 활용한 직접 참여형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작품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보호자 간 교류가 증가하였음.
- ② 금번 부모교육 참석인원이 많아 작품을 제작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계획보다 30분가량 지연되었음.
- ③ 스파클링, 폼 등의 재료는 강사가 준비하고 색연필, 풀, 지우개 등의 재료는 보람터에 구비된 물품을 활용하여 무분별한 재료비 지출을 예방할 수 있었음.

3) 인터뷰 및 관찰평가

- ① 강의가 아닌 직접참여형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보호자들이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니 재미있다.”, “내 이름에 대해서 다시 생각 해 보게 된 것 같다.”,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등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였음.
- ② 직업적응훈련반과 오랜 시간 미술심리지원을 진행 해 온 미술치료사를 강사로 활용하여 부모교육을 마친 후 미술심리지원 참여대상 이용인 보호자와 미술치료사 간 개별상담을 실시할 수 있었음.
- ③ 각 보호자마다 작품을 다르게 해석하고 표현하였으며, ‘나’ 자신에 대한 보호자 간의 생각 차이를 엿볼 수 있었음.
- ④ 부모교육 및 간담회에 처음 참여한 신규 훈련생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간 Rapport 형성이 되어있지 않아 작품설명을 위한 의견 교류 시 소극적인 태도가 보였음. 적극적 참여 독려를 위한 다양한 개입방법과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11. 향후계획

- ① 학부모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부모자조모임을 활용하여 원하는 주제, 교육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② 참여형 수업의 경우 참석인원이 많을수록 부모교육 진행시간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육시간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필요할 것임.

12. 활동사진



2018년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8년 2 월 22일 16:00-17:30
담 당	김 은 숙
장 소	그루터기 프로그램실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8년도 늘푸른동산 사업 소개 및 운영 방침

1.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서비스 내용

1) 프로그램 이용기간 : 3년 이용 이후 재평가 통해 1년 더 연장가능

(서비스 계약서 상단에 이용기간 날짜 명시되어 있음)

2)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7:00까지 진행(송영서비스 시간제외)

3) 세부프로그램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09:00-09:30	내관지도				
09:30-10:00	조회(당일 프로그램 설명)				
10:00-10:40	*국악	*아쿠아피트니스 / 컴퓨터교육	*아쿠아피트니스 / 컴퓨터교육	*방송댄스	환경교육 인권교육 재난교육
10:40-10:50		휴식시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10:50-11:30		위생관리훈련	위생관리훈련		성교육
11:30-11:40	일상생활훈련(손씻기)				
11:40-13:00	점심 식사 및 양치지도				
13:00-13:40	만다라활동 /요리활동	*스트레칭	음악활동 /이용인 월례회의	일상생활훈련	*스트레칭 /지역사회 시설이용
13:40-14:00		휴식시간			
14:00-14:40	간식	헬스/공예체험	통합활동 (등산/ 숲체험)	헬스	헬스
14:40-15:00				퍼즐 및 보드게임	퍼즐 및 보드게임
15:00-16:30	*에어로빅	*배드민턴			
16:30-16:50	청소	간식	간식	간식	간식
16:50-17:00	종례 및 귀가 지도				

*표시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활동임

4) 외부지원사업

- ① 문화예술지원사업(국악/3월 중 실시)
- ② 장애인체육회지원사업(미정, 방송댄스)
- ③ 생활체육강사파견사업(에어로빅, 배드민턴 / 3월6일부터 주 1회 진행)
- ④ 숲체험

6) 기타사업

- 월 1회 : 지역사회시설이용 실시
- 년 6회 : 체지방측정(4회), 독감예방접종(1회), 건강진단(1회)
- 년 4회 : 구강교육, 비만교육, 위생교육(2)
- 월 1회 : 소방 및 재난안전교육
- 주 1회 :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활동
- 년 2회 : 상하반기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보호자 욕구조사
- 년 2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등반대회, 지역축제 참여
- 이용인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 부모상담- 수시
 - 부모교육- 년 4회 실시
 - 부모회 모임- 년 4회 실시
 - 가족여행-
 - 가족송년모임 실시 - 12월 중 실시되며, 가족 모두 참석하여 본 센터 사업 보고 및 시상식 진행

제 6 장 부모회

제16조 (부모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모 모임을 부모회라 칭한다.

제17조 (부모회 및 부모교육)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를 개시한 날부터 이용인의 부모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실시하는 부모모임이나 부모교육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이용료

- ① 이용료는 130,000원이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첫째 주 금요일까지 입금
(단,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세대의 경우 이용료는 50% 감면)
- ② 식대는 월 단위로 54,000원 금액을 현금납입하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첫째 주 금요일까지 입금

<2018년도 월 이용료 산출근거 내역>

구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여가 생활 지원 활동비	아쿠아피트니스 이용료	8,600원	월4회×30,000원 ≒14
	방송댄스 이용료	8,500원	월4회×2,125원
	공예체험 재료비 및 강사료	10,000원	월1회×10,000원
	만다라 활동 재료비	5,000원	월4회×1,250원
	요리활동 재료비	28,500원	월2회×100,000원 ≒14
	지역사회시설이용비	10,000원	월1회×10,000원
	기타활동교구 교재비	14,400원	
	소계	85,000	
행사 활동비	가족송년모임, 지역축제참여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숲체험 등	25,000원	
	소계	25,000원	
생계비	간식비	20,000원	4주×5,000원
	소계	20,000원	
	기타운영비	-	
	총계	130,000원	

③ 환불

제14조 (환불)

- 이용인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 중단 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 운영 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상황에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정을 정한다. 즉, 15일 이전 종결 시에는 이용료 및 식대는 50%를 지급하고 15일 이후 종결 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4. 서비스 종결 내용

운영규정 중 제 9조 <서비스 종결>

본 주간보호센터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포기 -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대상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무단으로 연속 2회 이상 결석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

3. 일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나, 일정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이용자의 장애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3) 무단으로 서비스에 연 5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 (4)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 (5) 일시종결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단, 일시종결은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화재)가 있는 경우 1개월로 국한하며 1개월이 지날 경우 자동종결 된다.

한국의 발달장애인 신탁제도의 운영 현황과 과제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8년 5 월 24일 / 서면자료
담 당	김 은 숙
장 소	서면자료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의 발달장애인신탁제도의 운영 현황과 과제

전창훈 변호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I.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의 필요성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사업을 시작한 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재산 갈취 등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서 종종 접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립을 주저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고 하여 발달장애인들을 지역사회와는 고립된 ‘안전한’장소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발달장애인 역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때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더 나은 사회적 배려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사회는 발달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여야 하고 나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사업’을 시작하였다. 신탁은 발달장애인과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유용한 재산관리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미 미국, 영국, 호주 같은 서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재산 갈취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보호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도 있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물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후견인도 발달장애인인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사무 등을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공무원 결격사유, 선거권 제한, 자격취득 제한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많은 제약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후견제도의 한계와 후견제도의 보충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후견제도와는 별개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로 재산 관리사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에서도 신탁을 활용한 고령자와 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II. 한국의 발달장애인신탁제도의 현황

1. 발달장애인신탁제도의 경과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부모 등이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로 장애인을 지정하여 그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신탁계약을 통해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고, 부모의 사망 등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개별적인 수요를 고려한 이른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한다.

현재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신탁은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이 있다. 이를 제외하면 현재 민사신탁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사업으로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이 유일하다. 또한 최근에는 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친족후견인 등 후견인의 재산적 배임행위로부터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후견지원신탁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는 실정이다.

가. 장애인특별부양신탁 :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사용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부모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발달장애인에게 5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고 이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업자에게 신탁으로 맡기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탁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중산층 이상의 가정으로 5억원 정도의 신탁재산을 맡길 수 있는 경우에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의료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원본을 사용할 수 없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익금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라는 상황을 가정하여보면 이러한 수익금을 장애인의 일상생활상의 욕구나 수요를 충족할 물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사회 복지적 서비스를 담당하지는 못하여 그 수익이 수익자인 장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나. 후견지원신탁: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후견인이 수행하는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사무를 신탁제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사건이 급증으로 법원의 후견인 감독업무가 증가하고 후견인에 의한 부정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한국 역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년후견지원신탁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나오기도 하였다¹⁾.

후견지원신탁은 본인(피후견인)의 금전재산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성년후견인이 관리하고, 나머지 재산을 신탁은행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관리하는 것이다. 통상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되어 일정기간 후견사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한 사무를 토대로 하여 본인의 재산상황 및 일상생활상의 수요를 파악한 후, 적절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신탁계약체결 이후 전문직 후견인은 사임하고 친족 등이 후견인이 되어 후견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지시서를 받아 신탁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신탁재산을 필요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후견지원신탁은 신상과 관련된 사무를 친족후견인이 잘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재산관리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당사자의 일상생활상의 욕구가 잘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친족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친족후견인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 전문가 후견인이 계속 선임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없다. 특히 후견 지원신탁은 재산의 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로 피후견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그 재산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있다. 통상의 경우 친족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상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 피후견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통상의 수준에서의 재산사용 및 관리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지원신탁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발달장애인 신탁사업: 현재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는 민사신탁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신탁사업은 신탁의 특성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신의 취향, 욕구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자폐인 사랑협회가 부모님 또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협회가 수탁자가 되어 수익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신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1) 하나은행에서는 2017년 1월 성년후견지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탁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의 경제적 기반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사용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사신탁을 활용한 사인간의 신탁을 활용한 지원 사업으로 비영리로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신탁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탁을 영리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위 신탁사업에서는 신탁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이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이 앞서 언급한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과 가지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위 사업에서는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액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이를 보관하고 신탁재산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수요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안전환 관리를 넘어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가 적시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신탁은 개별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부모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수립한다.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지원계획과 이에 근거한 발달장애인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복지분야 종사 공무원, 사회복지학 및 법학 교수, 회계사, 변호사,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 등이 참여한 신탁 관리위원회를 통해 개별 사례 및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과 감독을 받음으로서 발달장애인 신탁이 당사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Ⅲ. 발달장애인 신탁의 유형과 사례

1. 발달장애인 신탁의 유형

발달장애인 신탁은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상과 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이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신탁의 이용사례를 이용대상, 이용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1)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은 현재는 부모님의 지원 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향후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이다. 발달장애인

의 경우 직업 활동을 통해 자립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얻는 것은 매우 희박하므로, 향후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나 공적 부조에 의존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자녀를 위한 최적의 지지자가 있다는 점이다. 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성, 성향, 기호, 의료정보 등 개별적 특성을 비교적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향후 발달장애인이 의사, 욕구를 반영할 때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희망, 욕구에 따른 삶의 전반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 능력배양, 단기적인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부모님을 통해 가능한 시기이다. 특히 노년기의 부모님의 경우 부모님의 지원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임박하였으므로 신탁을 활용한 자녀의 자립기반을 설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2) 돌볼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은 타인에 의한 재산 갈취에 대한 위험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금전개념이나 숫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직접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여 이러한 재산 갈취를 당하는 경우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재산적 피해의 양상을 살펴보면 재산적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인지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그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적당한 지원자나 조력자 없이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전적인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발달장애인 신탁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 특히 중증의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에는 향후 자녀가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계획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토대나 기반 이 부족한 현실에서 부모님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선택이다.

현재도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러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장애인연금 등의 공적 부조를 받게 되어 매월 소정의 연금이 본인의 계좌로 들어오게 된다. 또 일부 장애인들은 근로활동을 통해 소정의 급여를 받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친척이 금전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설에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금전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재산은 통상 해당시설에서 관리를 해주는 경우

가 많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감독하기 위해 적지 않은 행정비용을 소모하기도 한다. 비단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발생한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해당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는 있으나 그 관리권한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재산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신탁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관계가 명확히 규정된다면 이를 관리하는 시설의 관계자의 입장에서 그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2. 발달장애인 신탁의 사례

(1) 홀로 남겨질 자녀를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신탁

사례 1.

A양(36세, 여성)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A양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였고 최근에는 지역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A양의 부모님은 그들의 자녀가 생활할 수 있는 그룹 홈을 알아보고 있으나 아직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양의 부모님은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사후에도 A양이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A양을 위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사후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적당한 후견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 A양에게는 한명의 오빠가 있지만 A양의 부모님들은 오빠가 A양의 재산을 관리하고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산의 일부를 A양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가지고 있다.

(가) 계획수립하기

위 사례에서 A양의 부모님은 우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계획 및 재정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렇게 수립된 실행을 위한 재산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A양의 의사결정을 조력해줄 수 있는 지원자 또는 후견인을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민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은 이러한 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계약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님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①초기상담, ②전문가상담(사례회의), ③개인별 평생계획수립, ④점검 및 수정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사회복지사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당사자 및 부모님의 욕구가 충분히 도출이 되면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계약의 내용이 설계되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계약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거쳐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설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계획 및 이를 위한 재정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체결된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수탁자가 신탁계약의 내용대로 관리하게 된다. 수탁자는 이러한 신탁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및 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신탁재산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수탁자가 도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되지 못하므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탁자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면 보다 더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탁을 통한 재산관리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이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지원자가 필수적이다. 여기서의 지원자는 민법상의 후견인과는 달리 일정한 법적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인 수익자의 의사결정을 조력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전달하고 수익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배분금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의무를 수탁자에게 부담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탁자는 지원자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신탁재산이 수익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나) 신탁계약의 내용

A양의 부모님은 매월 18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는 A양에게 이를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신탁을 통하게 되면 부모님의 생전에는 부모님이 직접 관리하고 사후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하는 방법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A양의 일상생활비용에 대해서 부모님이 부담하고 있어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A양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적립하여 향후 일상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 및 여가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를 처분하고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속적인 임대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A양의 부모님 사후에는 오빠가 지원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상생활비용 중 그룹홈 비용, 활동보조인 비용과 같은 정기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그 용도가 확인되면 수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자의 사무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수반되는 지출과 관련된 부분을 위임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등을 통해 신탁재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신탁재산의 사용과 관리는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목적과 방식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신탁계약은 계약체결 준비단계에서 수립된 평생계획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재량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 수익자인 당사자가 생활하는 환경과 여건,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사전에 반영하여 계약을 설계한다는 것을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수탁자는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A양을 위한 신탁계약 역시 일정액 이상 신탁재산의 처분이 있거나 신탁계약의 목적사항, 지원자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신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의적인 신탁재산의 처분이나 관리를 막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지원자,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사무 및 재산관리사무를 후원하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재산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보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친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후견보수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충실한 후견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신탁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특수교육전문가, 발달장애인의 부모 등의 자문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양은 의사소통능력 및 일상생활능력이 비교적 우수하여 당사자의 의사결정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자, 신탁을 통한 재산관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안전망이 구축된다면 법적권한을 가진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후견실무에서도 재산관리를 위한 후견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을 통해 재산관리의 부분이 해결된다면 후견개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이후 A양에게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및 대리가 필요가 발생한다면 그때 후견을 개시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며, 후견인이 선임된다고 하여도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전적으로 후견인의 관리 하에 맡기는 것보다는 신탁을 통해 관리하는 것

이 보다 더 안전한 재산관리 방법이 될 것이다.

(2)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사례 1.

B씨(64세, 남성)는 서해안 도서지역의 염전에서 30년 동안 일하였고 그 과정에서 염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B씨는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는 않았으나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된 채 노역에 시달렸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구제, 재산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원은 B씨에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을 통해 피해구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B씨는 우선 약 2천만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B씨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생활하게 되었으나 우연히 알게 된 박 모 씨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으며, 본인명의로 3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약 300만원 상당의 기기대금 및 통신 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사례 2.

C양(32세, 여성)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가 C양을 양육하였으나 5년 전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C양에게는 남동생이 한명 있으나 남동생은 C양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C양은 아버지 사망 이후 가출청소 년들로 구성된 소위 ‘가출팸’에 들어가 이들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이들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성 매매를 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C양을 강박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약 3천만원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 현재 C양은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C양은 그간 근로활동을 통해 약 2천만원의 재산을 모았으나 최근 친한 친구들의 꾀임에 빠져 이들에게 식사와 술을 사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C양에게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다.

사례 3.

D군(36세, 남성)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생활하며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이다. D군은 자립생활센터의 교사와 동거하는 장애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D군은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고 지난 3년 동안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2천만을 모았다. 4년 뒤 D군은 자립생활센터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D군은 직장 동료의 꾀임에 빠져 성매매업소에 출입하게 되었고 그간 힘들게 모은 2천만원의 자립준비자금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다. 생활교사는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염려하

여 가까운 은행에 D군이 예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연락을 달라고 당부를 하였으나 D군은 다른 지역의 은행을 찾아가 돈을 인출한 것이었다. D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고 있으나 피해구제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D군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가) 계획수립하기

위 사례들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 갈취 등의 재산적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발달장애인은 타인이 위력을 가하는 경우 이에 저항하여 적극적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아 그 피해가 반복적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거나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휴대폰,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바는 경우 이러한 채무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다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발달장애인의 재산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이러한 피해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재산적인 피해를 입기 전에 신속하게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재산피해의 사전적으로 예방수단으로서 신탁의 효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신탁계약의 내용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달리 위 사례들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이 신탁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신탁재산으로 맡길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한정적이고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수급비 및 근로소득을 통해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주거수선 및 환경개선 등의 비정기적인 생활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자립준비금 등 특별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탁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설계한다. 물론 당사자가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나 정기적인 소득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일상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사례들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금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상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상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금전관리능력, 생활비의 지출패턴 등을 고려하여 2주에서 1개월 주기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 후견인 등이 지원자로 지정되어 이들의 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비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후견인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제출한 뒤 예상 견적을 통고하면 이를 지급할 것이다. 이후 진료 및 치료가 완결되면 수탁자는 실제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신탁재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위 사례의 D군과 같이 주거마련을 위한 저축이 필요하다면 신탁을 통해서 이를 모으는 것이 안전하다. 신탁을 통해 맡겨진 자립준비금은 중도에 D군이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싶어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4년 후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주거마련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수탁자가 이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다른 긴급한 사유로 목적 외의 재산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또는 수익자가 요청시 수탁자는 신탁관리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신탁계약의 목적을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맡겨진 신탁재산은 B씨와 C양의 사례처럼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휴대폰 개설, 대출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사해목적의 신탁이 아닌 이상 채권자들이 신탁재산으로부터 집행을 할 수 없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사례 4.

지적장애인 F씨는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비장애인 아들과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F씨는 같은 건물에 생활하고 있는 이웃주민 G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였고 수년 동안 G씨는 F씨의 육아,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던 중 G씨는 F씨를 기망하여 소액의 금전을 편취하기 시작하였고 3년 전 급기야 F씨가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편취하였다. 당시 F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피해금 중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어음으로 지급받은 상황이다. 이후 3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G씨는 아직까지 어음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 계획수립하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에 의한 금전의 편취 등에 의해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나 적절한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만약 발달장애인의 재산이 신탁을 통해 수탁자에게 맡겨지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자로서 소송행위를 포함하여 적당한 재산관리 행위를 수탁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타인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양도 절차를 거쳐 신탁

재산으로 맡긴다면 수탁자는 그 채권을 추심, 변제받거나 이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신탁을 통해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나) 신탁계약의 내용

F씨와 초기상담과정에서 어음이 있다는 사실이 담당 변호사에게 보고된 시점에서 위 어음은 소멸시효 완성까지 1달이 남아 있었다. 만약 사례관리자가 이 사실을 1달 뒤에 알았다면 F씨는 1천만원의 어음금채무를 지급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탁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어음발행인과 면담을 하여 변제의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 변제 자력이 없으므로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탁자는 채무자의 변제의지와 계획을 확인하고 3개월 지급 청구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어음을 발행받았다. 3개월 후 어음발행인은 약속한 변제계획대로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6개월 뒤 남은 금액에 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신탁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같이 해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신탁재산에서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다. 하지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있다. 사례와 같이 채권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장애인 이 상속받은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절히 종료시키고 더 나은 조건의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탁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업무들에 대하여는 관리비용이외에 별도의 부담이 없어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사례 1.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H양(22세, 여성)은 어릴 적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후 어머니와 떨어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설의 종사자들은 H양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가급적 본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H양은 현재 인근 고등학교에서 행정보조 일을 하며 매월 일정한 수입을 얻고 1천만원 정도의 저축도 하였다. 하지만 과거 H양의 부모들은 H양이 저축한 돈을 가져간 바가 있다.

(가) 계획수립하기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거주시설에서 거주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통장관리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최근 이러한 시설에서 거주자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 감독에 많은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재산을 부모 또는 가까운 친족이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만 시설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재산관리를 위해 신탁을 활용한다면 현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자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들 실질적인 관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시설종사자들의 책임의 범위와 한계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나) 신탁계약의 내용

처음 상담을 위해 거주시설에서 만난 K양은 지역사회에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된다면 자립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지원자가 되어야 K양의 부모들이 K의 재산을 가져가는 상황이었다. 시설종사자들 역시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들의 역할, 지위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K양이 어렵게 모으는 재산이 향후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신탁계약을 통해 부모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향후 자립을 위한 주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목적 설정하였다. 향후 K양의 부모, 친인척 또는 제3자가 신탁계약상의 목적이외에 사용하기 위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급을 거절하여야 한다. 만약 처음 신탁계약에서 설정한 목적 이외에 다른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신탁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외 사용을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지원자는 신탁관리위원회에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발달장애인 신탁의 과제

1. 발달장애인 신탁의 개선방향

지금까지 한국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지는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방안으로 신탁의 활용가능성과 그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유일하게 제도화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부양신탁은 최근 일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정도의 변화만으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현재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사업 역시 신탁제도에 대한 토대가 영미법계의 다른 국가들과 다른 법문화적 토대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서도 3년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개선과 설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가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접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²⁾

첫째, 한국사회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생소한 상황이다. 이는 이러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적인 제도의 지원이 부재하며, 재산관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 전문가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계획에 대한 부재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불안과 염려를 증가시키게 된다.

둘째,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미래계획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의 부재는 부모와 가족들이 오롯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과 함께 돌봄의 연속성이 붕괴되어 발달장애인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공적제도인 후견제도와 사적 금융제도의 서비스 등이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일상생활의 지원, 돌봄의 연속적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한다.

넷째, 제도의 지원의 내용으로는 국가의 기본생활보장, 포괄적 계획, 공공성, 돌봄관리체계, 재원 확보, 양질의 지원자 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재정계획의 중요요소로서 재정계획과 관리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의 차등 없이 제공되어야 하나 비용은 차등적용 되어야 하고, 부모의 노후에 대한 계획 역시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걱정과 염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는 ①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지원계획의 수립절차, ②이러한 계획에 바탕을 둔 신탁서비스의 제공과 공적운영기관, ③ 발달장애인을

2) 이하의 내용은 「신탁을 활용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재정·재산관리 운영 방안 연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2017. 6. 119면 이하의 성인기발달장애인 부모집단과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것임.

지원하고 안정망이 되어 줄 수 있는 지원자(서비스)의 원활한 연계, ④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수요에 대한 공적 부조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성에 입각하여 필요한 현재 한국의 장애인신탁제도의 개선방향 및 설계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현재 영미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수요신탁제도는 공적 부조에 의한 생계급여, 장애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한편 발달장애의 특성상 필요한 의료적 처치, 지원서비스 등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재원을 신탁을 통해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평균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일정한 정도의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공적 부조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소정의 재산을 남겨주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결국 발달장애인은 경제적으로는 공적지원에 의존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의 요구는 정부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나 결국은 재정상의 한계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수요신탁은 장애인이 자기 재산을 신탁의 형태로 보유하더라도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에서 수급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³⁾. 이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적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이러한 공적재원과 사적재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발달장애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서 공적부조가 제공하는 수준의 삶의 질을 넘어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공적 신탁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을 통해 부모님의 사적재산을 출연하는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공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신탁서비스 제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그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장애인부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충실한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가 특별수요신탁회사를 설립하여 특별수요신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신탁이용료 역시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러

3) 특별수요신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철웅, 최윤영, 중증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 비교사법 21권 3호(통권 66호), 1139-1184 참조

한 신탁서비스 제공기관설립 또는 지원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에서 시행이 되어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신탁서비스를 보다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제공지원기관의 설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공적 신탁기관은 단순한 재산의 관리 및 집행을 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가정의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의 노후계획 등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가질 수 없다면 적어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되는 형식의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재정관리, 사회복지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산을 신탁에 맡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양질의 신탁재산관리를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자인 발달장애인이 그 수익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조차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공적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금융기관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그 이용이 담보상태에 있는 장애인특별부양신탁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Trust for Persons with Decision-making Disabilities Joey changhun

This article examines the status of trust used in Korea to support the property management of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to propose ‘special needs trust’ as an improvement plan. Although the 2013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it is suggested that there are still ways to manage the property of the disabled and elderly more securely in order to utilize the trust as an alternative. For this purpose, the introduction of a guardianship support trust, which entrusts the property of a ward to a trust bank and uses it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is being discussed. It has been initiated in some cases but there are problems to be solved in order to be fully functional. Currently, there ar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sell trust products for the disabled. However, the trust busines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has been already implemented by the Autism Society of Korea with poor results. This project is operated by a private organization called the Autism Society of Korea to entrust the property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how trusts provide support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in the community through examples. These cases prove that the trust protects the property of the disabled from the infringement of third parties and supports their lack of abilities in decision making. It will also support the property management in the direction desired by them, to meet the requirements to purchase necessities. Through this, the trust becomes a support system for the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and elderly. In addition, the article examines the state of the trust system desired by the parents with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to draw out the reasons for proposing the necessity of special needs trusts and the operational plan.

[출처]

2018년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중 발췌, 한국 후견 및 신탁연구센터, 2018
부모교육 18-12

2018년 열린일터 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 교육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8년 1월 11일 (목) 저녁 7시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8년 열린ilter 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 교육

I. 2018년 열린ilter 연간 사업 일정

- 동아리활동 : 2월부터 매월 2, 4주 토요일
(노래, 볼링, 영화관람, 제과제빵)
- 직원연수 : 3월 23일~24일(23일 휴무)
- 데이캠프 : 4월 중
- 비루고개축제 : 5월 5일(건설기술교육원)
- 등산 : 5회
- 하계휴가 : 7월 30일~8월 3일
- 복지관 성인 이용인 연합 체육대회 : 9월 19일
- 가을여행 : 11월 1일~2일
- 남동송년예술제 : 12월 19일
- 종무식 : 12월 28일

II. 2018년 일일 시간표

오 전	09시 00분 ~ 09시 30분	조회 / 작업 준비
	09시 30분 ~ 10시 3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0시 30분 ~ 10시 50분	쉬는시간
	10시 50분 ~ 11시 50분	프로그램 및 작업
오 후	11시 50분 ~ 13시 00분	점심시간
	13시 00분 ~ 14시 1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4시 10분 ~ 14시 30분	쉬는시간
	14시 30분 ~ 15시 4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5시 40분 ~ 15시 50분	쉬는시간
	15시 50분 ~ 16시 4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6시 40분 ~ 17시 00분	청소 및 종례

III. 2018년 근로자 및 훈련생 명단

근로자	훈련생
김형범, 김상준, 강웅혁	강병철, 조준희, 하은미, 박찬혁, 조국태

이해민, 한운철 이재상, 홍미리, 이형석, 양세정, 황지선 (10명)	김민아, 고혜민, 남아랑, 김경환, 노가영 이소영, 이민지, 이혁배, 박용완, 김재권 김현아, 김민지, 정지훈, 이현석, 양찬영 김웅재 (21명)
---	--

IV. 2018년 프로그램 참여 이용인 명단

프로그램명		담당자	횟수	이용인 명단
지역사회 적응훈련	근로자	류수진	연10회	근로자 전체
	훈련생	금민희	월2회	훈련생 전체
성교육 / 인권교육		금민희	연6회	이용인 전체
안전교육		윤성호	연10회	이용인 전체
건강교육		김지혜	연7회	이용인 전체
동아리활동		김지혜, 류수진 금민희, 윤성호	월2회	신청자
근로자 기본교육		김지혜	월1회	근로자 전체
자판기 관리	근로자	윤성호	주1회	김상준, 강웅혁
	훈련생		주3회	정지훈, 이민지 / 김재권, 이소영
운동 (비만관리)	근로자	류수진	주3회	김상준, 김형범, 한운철, 홍미리 양세정
	훈련생			정지훈, 이혁배, 김현아
사회기술 훈련 (훈련생)	1반	유종인	월2회	하은미, 고혜민, 이민지, 박찬혁 박용완, 양찬영, 김웅재
	2반	윤성호	월2회	노가영, 남아랑, 김민아, 강병철 이현석, 김재권, 조준희
	3반	금민희	월2회	이소영, 김현아, 김민지, 조국태 이혁배, 김경환, 정지훈
공예훈련(훈련생)		금민희	주1회	남아랑, 이민지, 김현아, 정지훈
요가스트레칭 (훈련생)		금민희	주2회	하은미, 조국태, 남아랑, 이현석 김웅재

V. 보호고용 운영지침

제정 2011.1.1

개정 2018.1.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의 근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보호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 보호고용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근로자의 정의) 본 지침에서 근로자라 함은 본 규정 제 2장에 의거해 보호고용 근로자로 선정되어 근로 계약이 된 자

제 2 장 근로자 선정 및 계약

제5조 (근로자 선정) 근로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로자 선정은 ‘근로자 선정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인들 중 6개월 이상 이용하였으며 ‘근로자 선정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매 연말 분기별 실시한 ‘근로자 선정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차기년도 근로자 10명을 선정한다.

제6조 (근로자 선정평가) ‘근로자 선정평가’는 본 시설을 1개월 이상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제7조 (근로 계약) 근로자로 선정된 이용인과 시설장은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3 장 프로그램

제8조 (재활프로그램)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 2)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 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3)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 평가
 - 4)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5) 지역사회 자원 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제 4 장 복 무

제9조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란,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일시)

1. 근무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개정 2015.1.1][개정 2017.1.1]
3.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한다.[개정 2015.1.1]

제11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개정 2017.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7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1.1][개정 2018.1.1]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제12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2조의 1 (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3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근무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제14조 (휴가)

1. 본 시설은 여름과 겨울에 정기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시기와 휴가 기간은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
2. 본 시설은 1년에 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신설 2017.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7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2017.1.1][개정 2018.1.1]

제15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개정 2015.1.1][개정 2018.1.1]
3. 배우자 출산 :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단,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시행 2013.2.2) [개정 2013.1.1][개정 2014.1.1]
4.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제16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6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17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 5 장 임 금

제18조 (임금지급 기준 및 방법)

1. 근로자는 월1회 임금을 지급받는다.[개정 2014.1.1]
2.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5.1.1]
3. 임금은 서류상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한다.
4. 근로자가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단, 본인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다.[신설 2014.1.1][개정 2017.1.1]
5. 시설은 매출금 및 법인전입금으로 근로자에게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개정 2018.1.1]

제 6 장 종 결

제19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근로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 종결
 -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근로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3. 일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써 증세가 회복 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이용인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 4)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신설 2015.1.1]
 - 5)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4. 계약종결
- ‘근로자 선정평가’결과 근로자로 선정 되지 않았을 때

제 7 장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제20조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서비스 담당자는 근로자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근로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21조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근로자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부모회의

제22조 (부모회의)[신설 2013.1.1]

1. 보호고용 근로자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VI.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2011.1.1

개정 2018.1.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의 훈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차 보호고용 등으로 전이되어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에게 적용되며,
2.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훈련생 정의)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진단 및 재활계획회의 결과 신규 이용이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개정 2016.1.1]
2. ‘근로자 선정평가’ 결과 작업활동프로그램 대상으로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제 2 장 서비스 과정

제5조 (훈련생 선정 및 과정)

1. 훈련생 선정을 위한 이용인 모집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 결원 시 접수 된 순서대로 진단한다.
2. 초기면접과 직업평가 후 재활계획회의를 실시하여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평가 기간은 일주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
3. 타기관의 동일한 진단(2년 이내)을 통해 의뢰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을 결정한다.[개정 2016.1.1][개정 2018.1.1]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1. 이용기간이 만료하여 이미 퇴소한 자
2. 2011년 1월 1일 이전 입소자 중 이용기간이 5년 초과된 자
3.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소자 중 3년 훈련 후 보호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한자
단, 3년의 훈련기간 연장자는 훈련을 지속하고, 그 후 보호고용 전환이 되지 못한 경우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7조 (훈련계약) 훈련생으로 입소가 확정된 훈련생과 시설장은 훈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훈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년 중 입소자의 경우에는 입소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일로 한다.

제8조 (구비서류) 열린일터 훈련생으로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계약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이용인의 권리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복지카드 사본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

제9조 (훈련기간) 3년간 훈련생으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년 훈련 후 평가를 통해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훈련생에 한하여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내용 및 훈련비)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거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1.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생이 장차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4시간 이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다.
 - 1)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2)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에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3) 작업훈련 : 작업 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4)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5)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6)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 7) 생산 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
2. 훈련비

- 1) 매월 정액의 훈련비는 없으나, 훈련 내용에 따라 실비를 납부할 수 있다.
- 2) 중식비는 매월 5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련수당 지급)

1. 훈련생은 월1회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개정 2014.1.1]
2. 훈련수당은 훈련계약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90% 미만 출근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1]
3. 훈련생이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훈련수당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단, 본인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4.1.1][개정 2017.1.1]
4. 시설은 매출금 및 법인전입금으로 훈련생에게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개정 2018.1.1]

제 3 장 복 무

제12조 (훈련생의 책임) 훈련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훈련생은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훈련일 및 훈련시간)

1. 훈련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개정 2015.1.1][개정 2017.1.1]
3. 휴게시간은 훈련계약에 의한다.[개정 2015.1.1]

제14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훈련생이 오전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
2. 조퇴라 함은 훈련생이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개정 2017.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7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8.1.1]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6. 이용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기관 이용을 위한 현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현장평가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한다. 단, 종결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현장평가 기간은 회당 최대 2주로 하고, 3회까지 인정한다.[신설 2015.1.1.]

제15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5조의 1 (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6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훈련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 직원교육으로 인해 훈련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5.1.1]

제17조 (휴가)

1. 본 시설은 여름과 겨울에 정기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시기와 휴가 기간은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
2. 본 시설은 1년에 5일의 휴가를 주고, 출근으로 인정한다. 단,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신설 2017.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7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2017.1.1][개정 2018.1.1]

제18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개정 2015.1.1][개정 2018.1.1]
3. 배우자 출산 :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단,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시행 2013.2.2)[개정 2013.1.1][개정 2014.1.1]
4.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휴가 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제19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6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20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21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훈련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기간 만료

훈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강제 종결

-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4. 일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훈련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써 증세가 회복 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훈련생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 4)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신설 2015.1.1]
- 5)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제22조 (훈련개시, 종결, 통보) 훈련 담당자는 훈련의 개시, 종결 상황을 최소 2주내에 훈련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4 장 대기자

제23조 (대기자)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이용 의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가 유예된 대상을 '대기자'로 칭한다.

1. 현 서비스 대상자가 정원에 달했을 때
2. 특수학교 및 학급에 재학 중일 경우 (단, 고3에 한해 대기할 수 있다.)
3. 본 시설 이용 중 특별한 사유(이용인 및 보호자의 입원 혹은 수술, 보호자의 출산 등)에 의해 2개월 이상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시종결을 하고 우선대기(1순위)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24조 (손해배상 등)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훈련생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부모회의

제25조 (부모회의)[신설 2013.1.1]

1.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어떻게 달라지나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8년 11월 1일(목) 19:00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등급제 폐지, 어떻게 달라지나

1. 왜 장애등급을 폐지하게 되었나?

- 2007년 4월 중증장애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을 다시 심사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는 신규로 1~3급 장애인등록을 하거나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은 36.7%의 장애인은 본래의 등급보다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등급하락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서비스 적격대상에서 탈락하는 일들이 발생되었다.
- 2011년 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장애등급 1급에게만 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1급을 지켜내는 일이 무척 중요한 일이 되었다.
- 2010년 7월부터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대위를 구성하여 장애등급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 2013년부터 정부는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 2015년 6월~12월까지 1차 시범사업, 2016년 6월~10월까지 2차 시범사업, 2017년 4월~10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종합판정도구 및 전달체계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장애등급제 폐지, 어떻게 달라지나?

1)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 활용

-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라는 용어가 '장애정도'로 변경되도록 장애인복지법 제 32조가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되었다. 장애등급이 없어지더라도 장애인등록제는 유지되고 6등급의 세부화된 구분이 폐지되는 것이다.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던 복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 장애등급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원하게 된다.(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4 개정)
- 등급 제한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문제를 방지하고 등급에 상관없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다.

- ① 기초상담 : 장애정도, 가족상황, 주요문제 등 복지지원을 위한 전반적 여건과 환경을 파악하는 조사

- ② 복지욕구조사 : 서비스 이용현황 및 희망하는 서비스 등을 조사해 공공·민간서비스 발굴, 지원 및 사례관리 시 활용
- ③ 서비스필요도 조사 : 돌봄 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분야별 서비스 필요도를 다양한 평가항목을 통해 계량적으로 평가

3) 전달체계와 연계한 맞춤형 복지 시도

-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이 목표
- 찾아가는 상담 실시 : 학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빠진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6 제 1항에 마련되어 현재는 기초수급탈락 등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독거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중복 정신장애인 등에까지 확대할 계획
- 민관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실시하고 관련근거를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7에 마련하였으며 지자체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복합위기가구에 한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4)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모든 장애인이 재심사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등록 장애인은 현행 자격이 유지되며 소지하고 있는 복지카드도 그대로 사용한다.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15개의 장애유형 분류도 없어지지 않는데 다만 2019년 7월 이후부터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에 장애등록 및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통합 신청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연계 받는 것이다. 장애등록 심사에서 장애정도를 평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행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하여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정도를 기록하게 된다.
- 감면·할인서비스 : 기존 수급자 혜택을 유지하고 신청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현행 1~3급/4~6급)
- 의학적 평가 기반 서비스 : 중증 장애인 병역 면제, 시·청각 장애 등 장애상태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는 현행 수준의 별도 기준 활용
- 기존에 장애등급을 서비스 신청기준으로 활용했던 20개 정부부처의 79개 서비스는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활동지원서비스 등)
- 장애인연금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던 것에서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수급 자격이 변경된다.

3. 향후 과제

1) 기존 혜택의 유지 방안 마련

- 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혜택이 사라지는 장애인이 없도록 서비스 총량이 감소하지 않게 하겠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비스 총량의 확대

-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장애등급에 따라 일률적, 기계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개인별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3) 정확한 욕구 파악과 연계를 위한 전문성 확보

-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연결해주는 담당 인력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 시·군·구, 읍·면·동의 담당 행정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2018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남동발간 2019-6호

- 발행일 : 2019년 2월
- 발행인 : 손 동 훈
- 편집인 : 장 미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